

장루·요루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□ 세부유형 : 장루·요루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루·요루의 종류 및 조성술 시행날짜 * 장루(요루), 방광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 가능 *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(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,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), 요루(요관피부루, 회장도관 등)의 경우는 장루(요루) 조성술 이후 진단 가능하고, 인공방광 수술을 한 경우는 수술 이후 심각한 배뇨장애로 진단 가능 * 합병증(배뇨기능장애, 장피누공 등)의 유무 및 정도, 진단소견 기재 - 심각한 배뇨장애 정도 및 요역동학 검사 소견 등
2. 진료기록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술기록지(필수 구비서류) : 장루·요루의 종류, 인공방광술 상태 확인 -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: 장루·요루 유지 상태 및 합병증(장피누공 등)의 정도 또는 심각한 배뇨장애의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(진단서 발행 당일 진료기록지를 필수 제출). * 복원가능한 장루인 경우 : 최근 1년 동안의 장루 처치기록지 및 장루물품 처방기록지 * 복원가능한 요루(신루) 및 방광루인 경우 : 최근 1년 동안 정기적 카테터 교환기록지 및 방광세척 기록지
3. 검사결과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: 장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* 배뇨기능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경과기록지를 함께 제출 * 심각한 배뇨장애 중 '청결간헐도뇨(CIC), 완전요실금'의 경우는 필수 제출이며, 인공방광 수술을 한 사람은 수술기록지로 대체 - 누공조영술 또는 복부 CT 판독지 : 장루 또는 요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누공(조성된 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)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* 진료기록지 및 수술기록지가 없는 경우 : 복부 CT판독지 (이미 시행하여 판독지가 있는 경우만 제출)
4. 소견서(필요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뇨의학과 전문의사가 발행한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소견서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: 장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
5. 증빙사진(필요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피누공(피부와 장 사이에 새길기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경우 : 환부 일반사진 - 수술기록지 및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: 장루 또는 요루, 방광루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(배꼽을 중심으로 복부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)
<p>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</p>	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기관의 외과, 산부인과, 비뇨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 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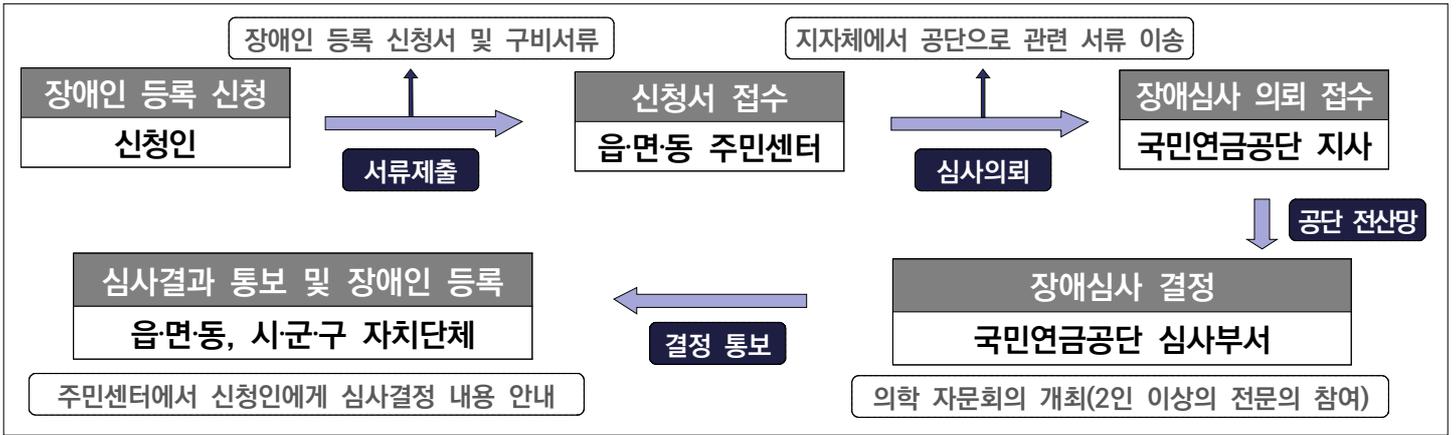
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
 - ※ 장루·요루: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
- 방광루(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)를 가진 사람

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

□ 장애인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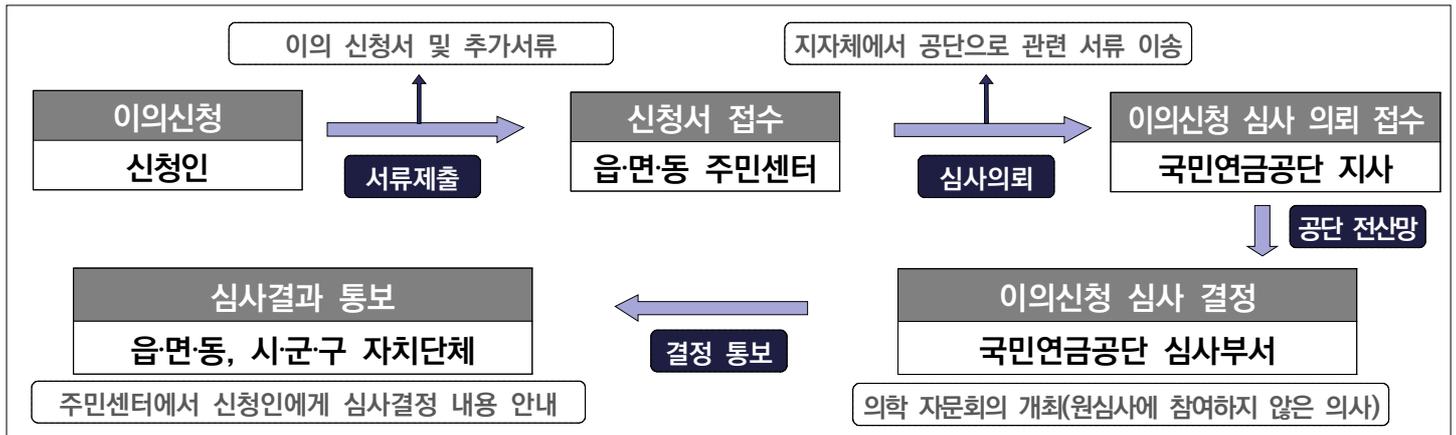
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합니다.



-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-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- 희망 시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(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)

□ 이의신청

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, 관련 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.



-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제1항) 합니다.
- '이의신청서' 양식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,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.
-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시·도 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(행정법원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
- ※ 단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